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복지정책과-6770
등록일자	2016.2.19.
결재일자	2016.2.20.
공개구분	부분공개(6)

주무관	희망복지지원팀장	복지정책과장	복지문화국장		
신영옥	옥미정	김구연	전결 02/20 김효길		
협조자					



2016년 제1차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보고

■ 회의결과

- 일 시 : 2016. 2. 16(화) 16:00 ~ 17:40
- 장 소 : 본관 지하 종합상황실
- 참석위원 :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김성천 위원장의 9명
- 안 건 : 총10개안건 심의 의결

연번	안 건	해당팀
1	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결정 심의	생활보장팀
2	명절위문품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액결정 심의	생활보장팀
3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권)자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	통합조사팀
4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	통합조사팀
5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권)자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산정여부 심의	통합조사팀
6	서울형기초보장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기피 관련 심의	통합조사팀
7	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확인조사 계획에 따른 심의	통합관리팀
8	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심의	통합관리팀
9	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	희망복지지원팀
10	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·주거비 연장 승인 심의	희망복지지원팀

■ 위원 위·해촉 현황

- 위촉인원 : 총5명(신규위원 3명 / 연임위원 2명)
- 위촉사유 :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위원 및 연임위원 재위촉

2016. 2. .

강 남 구
(복 지 정 책 과)

2016년 제1차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 결과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 등 총11개 안건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절대빈곤층 및 위기가구 발굴·지원을 위한 빈틈없는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내실을 기함.

I 관련 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(지역사회복지협의체)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5 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(실무협의체의 기능)

II 회의 결과

- 일 시 : 2016. 2. 16(화) 16:00 ~ 17:40
- 장 소 : 본관 지하 종합상황실
- 참석위원 : 9명 (김성천 위원장외 8인)
당연직 공무원 3명 / 민간위원7명
- 안 건 : 총 10개 안건 심의·의결

연번	안 건	해당팀
1	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결정 심의	생활보장팀
2	명절위문품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액결정 심의	생활보장팀
3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권)자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	통합조사팀
4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	통합조사팀
5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(권)자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산정여부 심의	통합조사팀
6	서울형기초보장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기피 관련 심의	통합조사팀
7	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확인조사 계획에 따른 심의	통합관리팀
8	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심의	통합관리팀
9	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	희망복지지원팀
10	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·주거비 연장 승인 심의	희망복지지원팀

III

위원 위·해촉 및 위원장 선출

- 위촉인원 : 총 5명(신규위원 3명 / 연임위원 2명)
- 위촉사유 :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위원 및 연임위원 재위촉
- 위촉기간 : 2년
- 위원장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장 선출
 - 민간 위원장 : 김성천 위원장

IV

심의결과

안 건	의 결 내 용	추진근거
①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결정 심의	- 심의대상 119가구 232명 : 원안가결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, 시행령 제41조
② 위문금 지급대상자 범위 및 지급액 결정 심의	- 위문금 지급대상자 범위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복지수급자 7,171가구 -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설, 추석(연2회)에 생계·의료수급자는 6만원/주거·교육·차상위는 5만원 - 원안가결	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
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보장가구 구성원 제외 심의	- 심의대상 1가구 1명중 1명 : 원안가결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리구제
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조치에 따른 심의	- 심의대상 43가구 64명 (부양의무자 66가구121명) : 원안가결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2항7호, 2015년사업안내 맞춤형운영 방안 지침
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량에 대한 일반재산 산정 여부 심의	- 심의대상 1가구 1명 원안가결	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2항, 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,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(p133~137,262)
⑥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부양거부, 기피 관련 심의	- 심의대상 1가구2명 원안가결	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제4호, 5호, 2016년 사업안내 지침 p71, 196
⑦ 2016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연간확인조사 계획에 따른 심의	- 심의대상 18,937가구 31,780명 원안가결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

⑧ 기초수급자중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심의	- 심의대상 수급자4가구 (부양의무자 4가구) 원안가결	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제2항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리구제 (국민기초생활 시행령제29조 제2항제2호)
⑨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심의	- 심의대상 87가구 (생계·주거64가구, 의료23가구) 원안가결	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,제14조, 제15조(2006.3.24 시행)
⑩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비·주거비·의료비 연장승인 심의	- 심의대상 6가구 (생계·주거4가구,의료2가구) : 원안가결	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,제12조

V 소요예산

- 참석수당 : 700천원
 - 참석 위원 1인당 10만원 (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참석수당 지급불가)
 - 산출내역 : 7인×100,000원=70,000원
- 예산과목 : 복지정책과,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, 민관협력체계구축,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운영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.

VI 기대효과

- 신속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보장 및 조건유예, 긴급복지연장지원 심의를 통해 보호누락자 방지에 기여
- 빈틈없는 민생안정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

- 붙임 : 1. 2016년 제1차 지역사회실무협의체 회의자료 1부.
 2. 회의록 1부
 3. 심의의결서 1부.
 4. 회의참석부 1부. 끝.